

종 법(宗法)

종무직원법(宗務職員法)

제1조 본 종법은 종헌 제19조에 의하여 종무직원의 자격 인사 복무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종무행정에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.

제2조 본법의 규정은 종헌에 규정된 이외는 본 종법에 의한다.

제3조 종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면을 구분한다.

1. 종회 또는 기타 회의를 통하여 임명되는 선임직원
2. 각급 기관장의 내신 및 추대 또는 제청을 받아 임명된 직원
3.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
4. 각 기관장이 임명하는 직원
5. 각 사찰에 봉직하는 승니 승보 주지 원장 전직원

제4조 종무직원 자격요건은 별표의 정한바에 의한다.

종무직원 자격별표

| 직 명 | 연 령 | 법 략 | 법 계 | 학 력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무원장 각원장 각 부원장 | 45세이상 | 15년이상 | 대덕이상 | 대졸 광원 대교과 동등자격 불교대학원 삼장법사과정 이수 |
| 각실부장 종무원장 | 40세이상 | 10년이상 | 중덕이상 | 대졸 불교대 동등자격 불교대 대덕법사 자격취득 |
| 각국장 일급사주지 | 35세이상 | 7세이상 | 중덕이상 | 고졸이상 동등자격 불교대 포교사 자격취득 |
| 각 교구장 | 35세이상 | 5년이상 | 대선이상 | 고졸이상 동등자격 |
| 주지원장사 포교당 | 30세이상 | 5년이상 | 대선이상 | 고졸이상 동등자격 |

제5조 다음 각항에 해당자는 종무직원에 임명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인 자
3.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제한된 자.
4. 종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제6조 각부장급 이상은 승니 승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0년 이상 수행한 심신이 돈독한 자.

제7조 종무직원이 재임중 전 제5조에 해당될 때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.

제8조 종현 제17조에 의하여 유발승은 부장급 이하의 종무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.

제9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